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 금액 상향 조정(안 제15조)
 - 현행 :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
 - 개정 :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법」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, 상위 법령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7월 일시 부과한도를 “10만원 이하”에서 “20만원 이하”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임.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,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대와 조세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